

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

사 건 2000타경0000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소 유 자 ◆◆◆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매 수 인 ●●●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 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락대금 금 ㅇㅇㅇㅇ만원정

1. 등록면허세(이전등기) 금 ㅇㅇㅇㅇ원정(지방교육세포함)







국민주택채권매입금 금 〇〇〇〇원

과세시가표준

1. 토지	○○○m²×○○○○원(면적단위가격) = ○○○○○원
1. 노기	000m×0000f(f(4f4f7f4) = 00000f

2. 건물 ○○○.○m²×○○○○원 = ○○○○원 (지역번호 ○○, 구조번호 ○, 분류번호 ○○, 신축 19○○년)

첨 부 서 류

1. 토지대장등본	1통
1. 건축물대장등본	1통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(토지 및 건물)	각 1통
1. 주민등록표등본	1통
1. 매각허가결정정본	1통
1. 매각대금납부영수증	1통
1.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	1통
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영수핔톳지서 • 영수핔확인서	각 1통

2000. 0. 0.

위 매수인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대 ㅇㅇㅇ.ㅇ㎡
- 2.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유치원

1층 ㅇㅇ.ㅇ m²

2층 ㅇㅇ.ㅇm²

3층 ○○.○ m²

4층 ㅇㅇ.ㅇ m²

지층 〇〇.〇㎡. 끝.



○○지방법원 등기촉탁서

등기관 귀하

사 건 2000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

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

등기권리자 ●●●(주민등록번호)

서울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

등기의무자 ◇◇◇

서울 ㅇㅇ구 ㅇㅇ길 ㅇㅇ

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0. 0. 0.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

등기목적 1. 소유권이전등기 2. 말소할 등기 : 별지와 같음

과세표준 금 00000원

등록면허세 (이전등기)금 ○○○○원(지방교육세 포함)

(말소등기)금 ○○○원(지방교육세 포함)

국민주택채권 금 〇〇〇〇원

등기신청수수료 금 ㅇㅇㅇ워

첨 부

- 1. 매각허가결정등본 1통, 촉탁서부본 2통
- 2. 주민등록표등(초)본
- 3.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

위 등기를 촉탁합니다. (등본작성: 2000. 0. 0.)

2000. 0. 0.

법원사무관 ■■■ 인

접			처	접수	조사	기입	교합	등기필 통지	비고
宁	제	ÌÒ	디						

제출법원	집행법원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144조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) • 송달료: 해당액수만큼 우표를 매입하여 제출 • 이전등기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: 등록면허세는 경락가액의 1,000분의 20{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'나'목1)}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) • 말소등기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등록면허세는 6,000원×○건{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'마'목)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) • 국민주택채권:○○○원(☞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: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1)					
기 타	•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①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, ②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, ③민사집행법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. 이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(민사집행법 제144조).		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